

## 경운대학교 보건실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및 후생을 위해 설치된 보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보건실은 학생처 산하에 둔다.

**제3조(회계연도)**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4조(재정)** 보건실의 재정은 경운대학교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**제5조(예·결산)** ① 보건실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다.

② 보건실의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(업무)** 보건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응급 간이치료와 구급약품 투여
2. 건강상담
3. 진료기관 안내
4. 학생의 신체검사
5. 예방접종 시행
6. 교내 환경위생
7. 기타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7조(실장)** ① 보건실에는 실장 1명을 둔다.

②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③ 실장은 보건실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8조(조직)**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보건실에는 진료의사와 약사, 간호사, 임상 병리사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** 보건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보건실의 실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다.

**제11조(운영위원회의 업무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건실의 운영 방침
2. 보건실의 사업계획 심의
3. 보건실의 예·결산 심의
4. 규정의 개폐에 관련 사항
5. 기타 대학 보건에 관한 사항

**제12조(위원회 소집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